

제1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1. 7. 12)

제2차 총무위원회 (2011. 7. 14)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 목 차 】

1.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1
2.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7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5.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6.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1

- 다.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지원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예산조치: 2011년도 2,943,018천원 예산확보

다.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복지분야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를 비롯한 상호정보 교환과 유기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 육성 지원 및 이용환경 개선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하였고 경남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일정하게 지원해 오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시설의 예산지원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09호, 2011. 3.30,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15, 타법개정]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의안번호 제2011 - 43호>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7. 4.

2. 제정이유

- 2005. 5월 조례 제정 이후 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실적이 없고,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정황에 비추어 그 존치 필요성이 회의적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제4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나. 추진위원회 설치(제5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다.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제7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2005년 5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 조례 제정 이후 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실적이 없고,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현실적 정황에 비추어 그 존치 필요성이 회의적인 상황임.
- 또한, 이 조례는 당시 경상남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경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지자체는 제정하였고 5개 지자체는 제정하지도 않았으며, 우리군에서도 제정 당시 한차례 심의가 보류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조례로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폐지를 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음.

- 따라서, 이 폐지 조례안은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볼 때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안번호 제2011 - 44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7. 4.

2. 개정이유

-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승강기산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 및 승강기R&D센터 지원사항과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 지원의 취소,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신설되는 용어의 뜻을 추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승강기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그 세부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원사업의 범위는 승강기산업체 유치 및 육성, 승강기산업집적화, 승강기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 승강기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마케팅 등
(안 제5조)

- 승강기산업체에 공유의 토지 임대 지원(안 제6조)
 - 수도권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의 지원(안 제7조)
 -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하여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지원에 해당될 경우의 지원(안 제8조)
 -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비용
지원(제9조)
 - 승강기산업체의 한국형 중·고속형 표준모델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0조)
 -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의 밸리 이전,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 손실분 지원(안 제11조)
 -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입주와 밸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숙소,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안 제12조)
 -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체 유치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안 제13조)
 -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무원 파견 지원(제14조)
- 다.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담보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운영상황의 보고·관계서류의 제출 및 검사
 - 관리대장 작성
 -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조치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하고, 업종
전환 시 군수의 사전승인
 -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산업구조
고도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2, 제26조, 제34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 제5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제11조, 제1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41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확보액(5,750백만원),
- 2012년도 이후 확보계획(9,400백만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입법예고(2011. 5. 26. ~ 2011. 6. 15.)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승강기산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과 승강기R&D센터 지원사항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신설되는 용어의 뜻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승강기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그 세부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 등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담보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그 밖에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산업구조 고도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 승강기산업의 육성·지원과 사후관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촉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란 승강기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 [전문개정 2009.1.3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1] [법률 제10491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 (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

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4.12>

⑥ 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30조 (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제46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 (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게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지도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2호, 2011. 4.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의4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3]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2010. 7.13, 일부개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20] [법률 제10653호, 2011. 5.19, 타법개정]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2008.3.28>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결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적용되는 녹지·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4.6> [제목개정 2007.4.6]

제31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 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제46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전부개정]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797호, 2011. 3.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6.4>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 2011. 6. 3, 일부개정]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

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 「국민연금법」

[시행 2011. 6. 7]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다. 별정우체국 직원
 -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⑥ 삭제 <2006.12.3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1. 6.20] [법률 제10653호, 2011. 5.19,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5.29>]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 - 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기업”이라 함은 제4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유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이라 함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신·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9호 및 제10호를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보조사업”이라 함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입지지원”은 제11호의 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비투자지원”은 제11호 및 제12호의 기업에 대하여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 “교육훈련지원”은 제11호 및 제12호의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단지아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16. “수도권 인접지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7. “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5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과 제16호에 의한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전부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19.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투자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20.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2. “지역선도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3.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4. “특화업종”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투자기업의 책무) 지방투자 기업은 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투자유치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일 것

3.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③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3.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4.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수도권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본사, 공장, 연구소의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전략산업·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 3.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소재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4.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이 1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보조금 지원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입지 및 설비 투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8조에 의한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집행액(20%), 최근년도의 설비투자액(20%), 지역의 낙후도(60%)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추후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에 따라 해당기업의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10억 미만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나. 위 원 : 5인 이내(지역투자과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8조 2항에 의한 지원타당성 심의

나. 제20조에 의한 성과평가

다.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라.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마. 기타 동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신·증설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6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사업을 평가하여 해당 투자유치계획에 따라 유치된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입지만족도 평가결과 상위 15개 이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0조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일 이내(단, 제9조에 의한 심의기간을 제외한다.)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제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신·증설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기업 또는

신·증설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미집행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해 관리대장(별지 제6호)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0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영위 7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단, 7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수하는 경우 환수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하지 않을시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제외

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입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시군 구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별표 5에 따라 재산정(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기지원된 보조금과 상계 및 환수처리 할 수 있다.

⑥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0조제1항의 입지지원금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7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7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 교육훈련지원 및 신규고용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대비 20%를 초과하여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⑧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및 신·증설투자 미이행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①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3년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투자금액을 검토하여 계획대비 미달금액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7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내지 제11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여부의 확인 등)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액
3.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4. 지방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5. 지방이전 및 실·증설투자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17조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한도) ①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별표 5의 주3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별표 5의 주3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별표 5의 주3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4.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으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별표 6의 주2 투자를 말한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세부지원기준의 수립 및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방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수립시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인센티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고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액의 1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에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고 2010년도까지 부지매입 등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2011년도에 한해 본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4호, 2011. 3. 9, 일부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4.14] [법률 제10589호, 2011.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매각 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1.4.14>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11 - 45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7. 4.

2. 개정이유

- 지방세 관계법령 분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등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과 포상금의 명칭 및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 함 (제명, 안 제2조제1항·제3항 단서, 제5조제1항).
-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과연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대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함(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 1년차의 체납액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 2년차의 체납액
-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 ⇒ 3년차 이상의 체납액

다. 취득세 통합에 따라 탈루·은닉 취득세원의 발굴 및 징수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함(안 제3조 제1항제5호).

- 납세의무성립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 ⇒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

라.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지급 대장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

- 신설: 별지 제3호서식<징수촉탁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 변경: 별지 제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호서식)<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

마.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급 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2011.01.10)호 및 경상남도 세정과325(2011.01.10)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1. 5. 12. ~ 5. 31.)결과: 특기사항 없음1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분법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제명, 안 제2조제1항·제3항 단서, 제5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명과 포상금의 명칭 및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
 -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과연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대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취득세 통합에 따라 탈루·은닉 취득세원의 발굴 및 징수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지급 대장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 지방세 분법에 따른 포상금지급조례등 개정추진계획

「○○시도(○○시군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

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 나.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 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상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이므로 존치하되, 설립근거규정 일부분구 정비(안 제5조제1항)
- 라.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시도(○○시군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시·도(○○시·군·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지방세법」 제56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로 하고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의”로 하며, 제4항중 “국장급(4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1년 경과한”을 “1년차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2년 경과한”을 “2년차의”로 하며, 동조제3호중 “3년 경과한”을 “3년차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 소속 세입징수금소관 국 또는 본부(이하"국"이라한다)에 ○○도(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2항중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를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로 한다.

제9조제3항중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로 한다.

별지 서식은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검토 양식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제2조(지급대상)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2조(지급대상)①----- ----- ----- -----. 1. ----- ----- ----- ----- 2. ----- ----- ----- 3. ----- ----- -----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 ----- -----	인용조문 정리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p>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p> <p>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p> <p>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p>----- ----- -----</p> <p>5. 납세의무성립일 ----- ----- -----</p> <p>6. ----- ----- ----- ----- ----- ----- -----</p> <p>7. ----- ----- -----</p> <p>② ----- ----- ----- ----- -----</p>	<p>취 득 세 로 통합, 취득 일 혼선 방지</p>
<p>제4조(지급한도)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p>	<p>제4조(지급한도)① ----- ----- ----- -----</p> <p>1. ----- ----- -----</p> <p>2. ----- ----- ----- -----</p>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u>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u> ○○도지사(시장·군수) 소속하에 각 국·사업소 및 본부(이하"국"이라한다)별로 ○○도(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p>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u>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u> ○○도지사(시장·군수) 소속 <u>세입징수금소관 국 또는 본부(이하"국"이라한다)</u>에 ○○도(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p>	<p>자치단체별 1개 위원회 존치에 맞 춰 조문정 리</p>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p>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는 소관 국장, 시군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p> <p>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p> <p>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p>	<p>----- -----.</p> <p>③ ----- ----- -----.</p> <p>④ ----- -----.</p> <p>1. ----- 2. ----- 3. -----</p> <p>⑤ ----- ----- ----- ----- ----- -----.</p>	
<p>제6조(대장비치)①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6조(대장비치)① ----- ----- ----- ----- ----- -----.</p>	
<p>제7조(지급신청)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를 당해 ○○시·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단서의 경우 도만 적용)</p> <p>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의 경우</p>	<p>제7조(지급신청)① ----- ----- ----- ----- ----- ----- ----- -----.(※ -----)</p> <p>②----- ----- ----- ----- ----- ----- -----.(※ -----)</p>	

현행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
<p>도만 적용)</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p>	<p>-----) ③ ----- ----- ----- ④ ----- ----- ----- -----.</p>	
<p>제8조(지급)①○○도지사(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지급)① ----- ----- ----- ----- ----- ②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 ----- ----- -----.</p>	<p>지방재정법 “지급명령” 개정조항정리</p>
<p>제9조(환수)①00도지사(시장·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① ----- ----- ----- ----- ----- ② ----- ----- ----- ----- ③ -----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 ----- -----</p>	<p>인용조문 정리</p>
<p>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 -----.</p>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7.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7. 4.

2. 제안이유

-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소재지와 주요시설,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 다.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 등 거창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라. 그 밖에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 확보(110백만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입법예고(2011. 5. 27. ~ 2011. 6. 16.)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가 신축됨에 따라 「거창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현행 조례 제명인 「거창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위치와 주요시설,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 등 거창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3조, 제24조에서는 그 밖에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 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위탁관리 근거와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거창문화원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원)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계발), 보급, 보존, 전승(전승) 및 선양(선양)
2. 향토사(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12.22]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일부개정]

제4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의 이용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30, 일부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6.15]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입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입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입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입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11 - 47호>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7. 4.

2. 개정이유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복합문화단지 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의 소재지와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과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그 밖에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별표).
- 마. 전수교육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및 위탁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 바.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에 관한 준용 규정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70조, 제7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 확보(20,000천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입법예고(2011. 6. 17. ~ 2011. 6. 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의 소재지와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과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그 밖에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별표에서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및 위탁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에 관한 준용 규정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에 따른 위탁관리 근거와 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4. 6] [법률 제10562호, 2011. 4.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30, 일부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6.15]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

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입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입 및 수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입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입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입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입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입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입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